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4. 인력양성 분야:
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